

# 報 道 資 料

10.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 
바랍니다.

## 題目: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

### 主要內容

□ 금번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

- 현재 「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」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, 향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

□ 개정안 주요내용

-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실제 상거래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, 인터넷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고,
- 동일 기업집단이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

※ 별첨: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개정내용

報道資料生産課: 保險制度課 (TEL: 500-5360~2)  
과장 최 규연, 담당 사무관 김 재환

財政經濟部 公報官

9/5

## 여신전문금융업법

### 1. 온라인상 결제대행업체(Payment Gateway)에 대한 규정 신설

온라인 카드결제를 위한 보안장치를 갖추 능력 없이 카드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

○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\*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

\* PG(Payment Gateway): 영세한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체

· 23개 업체가 영업중이며 2000년 매출액은 4,455억원(502만건)

### 2. 온라인상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

현행 법률은 오프라인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카드 부정사용\*(속칭 카드깡)을 한 경우에만 처벌

○ 온라인에서 매출전표 작성 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

\* 허위로 매출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통해 자금을 유통하는 행위

### 3. 분실·도난 카드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범위 확대

현행 법률은 카드의 분실·도난을 신고한 때부터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카드회사가 부담

\* 약관에 의해 카드회사가 신고시부터 25일을 소급하여 책임을 부담

○ 약관상 소급되는 카드회사의 책임부담기간(25일)이 짧다\*는 지적이 많고, 책임부담기간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

- 카드회사가 신고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을 소급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

\* 특히 전자상거래시 카드가 盜用된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대금청구서를 받기전까지는 도용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신고가 어려움

#### 4. 30대 기업집단 원용 규제 개선

다른 금융기관과의 교차 여신등을 통해 여신한도 회피를 금지하는 대상 확대

○ 현재 30대 기업집단소속 여신전문금융회사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

동일 기업집단이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폐지

○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복수로 설립할 지 여부는 당해 기업집단이 판단하도록 함